

## □ 관련규정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(검사) 및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32조(지출의 절차)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끝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·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, 일상경비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산출기초조사서,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

## □ 지적사항

사례1> 소모품을 구입하며 기존 납품사진을 재사용하여 물품구입에 대한 진위성을 결여시키는 등 허위 검수

사례2> 견적서 내용과 상이한 증빙사진(싸인펜 등)을 첨부하는 등 사무용품을 허위 검수하여 지출

사례3> 커피, 과자류 등 다과를 구입하면서 장부에 외상 기재 후 사후에 서무가 비용 정산하는 과정에서 허위견적서 첨부하는 등 허위 검수하여 지출

## □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

-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 등을 검토·확인하는 등 허위 검수·검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